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96

발의연월일: 2020. 11. 24.

발 의 자:이병훈·유정주·박완주

송재호 • 박 정 • 이상헌

민홍철 • 이장섭 • 민형배

김철민 • 박성준 • 전혜숙

신영대 의원(13인)

제안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변화・발전의 중요한 증거이자 문화유산 향유・활용의 중점대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관련 문화경관・산업경관・역사도시경관 등과 함께 근대시기 산업유산과 20세기 현대건축물 등을 새로운 보존대상 유산으로 제시하고 있어 세계유산의 보존대상이 공간적・시간적으로 근현대적 개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한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2001년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의지를 근간으로 유연한 보호조치를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한 결과, 현재까지 878건의 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국가의 특색 있는역사문화자원으로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등록문화재 제도는 50년이 지나지 않은 현대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 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형보존 원칙의 지정문화재 중심 「문화재보호 법」 체계 내 완화된 보호조치의 등록문화재 제도 확장의 한계, 긴급 보호조치 규정 미비 등 등록문화재 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점이 노정 되고 있어 근현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 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50년 미만인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제도를 통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 유산 개념 도입 및 지속가능한 보전・활용의 기본원칙 정립 등을 통 해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보전・활용을 도 모하고자 함.

아울러 임시국가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미비된 등록문화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활용 지원 근거 등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미래세 대를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안 제2조).

- 나. 근현대문화유산은 지속가능한 보전 및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역사적・예술적・사회적・학술적 가치 유지・계승 등의 사항이 포 함되도록 함(안 제3조).
- 다. 문화재청장이 제7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함)를 고시할 때 필수보존요소를 함께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 도록 함(안 제8조).
-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국가등록문화재로 임시등록할 수 있음(안 제10조).
-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국가등록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와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7조).
-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국가등 록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음(안 제23조).
-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33조).

-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도등록문화재가 아닌 근현 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 하여 장래 등록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 화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 자. 국가예비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재가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관리단체의 선정·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수 있음(안 제48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51조).
-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 · 예술적 · 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는 제외한다.
 - 가.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건축물, 무덤·터·유적지, 가로·경 관 등
 - 나. 근현대동산유산: 미술·예술·공예품, 문서·서적·기록류, 의 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
 - 2. "등록문화재"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

록한 것을 말한다.

- 가. 국가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근 현대문화유산
- 나. 시·도등록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39조제 1항에 따라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
-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 등록문화재(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가 있는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문화재청장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4. "예비문화재"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장래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문화재청장이 제 4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전·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사회적·학술적 가치를 유지 ·계승할 것
 - 2.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 3. 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관리 등

제1절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제6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전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1항에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를 등록한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① 문화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근현대부동산유산으로 한정한다)를 고시하는 경우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함께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 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 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를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등록증의 교부)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를 등록한 때에는

-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재) ①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제6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의 효력은 임시등록된 근현대문화유산(이하 "임시국가등록문화재"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임시등록은 임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 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이 없으면 말소된 것으로 본다.
 - ④ 임시등록의 통지와 임시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9 조를 준용하되,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국가등록 문화재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 조제1항·제3항, 제19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절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 제12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 제1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해당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단체를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의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 ④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가 수행하는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하여 금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현황·관리·운영 등에 관한 자료를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의 지정은 관보에 이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14조(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가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국가등록문화재를 직접 보존·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제15조(국가등록문화재의 기록) 문화재청장과 국가등록문화재 관할 시 ·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 등록문화재에 대한 보전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 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국가등록문화재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사항)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 5. 국가등록문화재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6. 국가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7. 제18조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이를 완료한 경우
- 8.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이 허가된 국가등록문화재를 반입한 경우
- 9. 국가등록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 ①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 3.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 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4. 근현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내용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현상변경 행위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할 수 있다.
- 제18조(현상변경 허가) 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2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2.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은 경우
 - 3.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 정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 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 1.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2.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 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 ④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현상변경 허가사항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20조(행정명령) ①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

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 2. 국가등록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또 는 그 밖의 긴급한 조치
- 3.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등록문화재의 현 상을 변경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 4.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국가등 록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건 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공사중단 및 훼손・멸실・수몰 예방조치
-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 문화재 관리단체가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면 이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장

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전 및 관리실 태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재를 재조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등록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게 그 사 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 이후에 이를 알릴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국가등록문화재의 수리 및 복구

- 2.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전을 위한 일정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 3.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긴급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전 및 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사실의 통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가치재평가) ① 문화재청장은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재의 가치를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의 말소,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필수보존 요소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보급)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재료, 건설, 제작기술 및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리에 필요한 재료, 기 술,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25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가 멸실, 가치의 상실 등으로 보전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② 국가등록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 ① 문화재청장은 제25조에 따라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을 말소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교부받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 ① 국가등록문화재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 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반출 신청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⑥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19조제1항를 준용한다.

제3절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지원

- 제28조(국가등록문화재의 보전 비용 지원 등)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

- 는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전,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 2.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 3.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
- 4.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를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 ④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재로서 지방자 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전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전·관리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국가등록문화재의 공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가 국가등록문화재의 활

- 용을 위하여 해당 국가등록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훼손 또는 가치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요건·절차, 지원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요건·절차, 공개 제한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0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국 가등록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등록 문화재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가 정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31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

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32조(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① 국가등록문화재 (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6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로한정한다.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제2항, 제53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4조, 제84조
 - 2.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 4. 「민법」 제242조제1항
 - 5.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제11조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 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국가등록문화재 해당 여부
- 2.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 3.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사유 및 예상효과
- 4. 완화 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 내용(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특례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2항제4호에 따라 제1항제 6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 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

-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재가 개 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 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 변경 및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근 현대문화유산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① 제33조에 따라 지정

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 ·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 · 기본방향 및 필요성
-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재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재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5.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유지를 위한 경관의 조성
- 6.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방안
- 7. 제38조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 업 또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 ③ 그 밖에 활용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이로 정한다.
-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 ·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3. 활용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관한 사항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한다.
 - ③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 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는 경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위치한 등록문화재가 아닌 건

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 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구역에서의 완화 규정. 다만,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2. 「건축법」 제46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 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①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근현대문화 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등록문화재의 주변 정비
 - 2. 주차장 및 지역 주민 편의시설 개선 사업
 -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 건조물 외관 정비 및 가로 보전
 - 4.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 5.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내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 주변 건조물의 규모, 배치 및 경관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등록문화재 보전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조성 사업의 시

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절차와 지원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관리

- 제39조(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아니한 것 중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 게 등록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40조(시·도등록문화재 등록의 말소)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에 있는 시·도등록문화재가 멸실·훼손, 가치의 상실 등 보전과 활

- 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② 시·도등록문화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거나 「문화재보호 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 제41조(경비부담) ① 시·도등록문화재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그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 등록문화재의 보전·수리·활용 및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2조(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취지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시·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
 - 2. 시·도등록문화재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3. 시·도등록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 손된 경우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이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43조(준용 규정) ①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관리, 지원, 말소 등

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는 "시·도등록문화재"로,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는 "시·도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② 시·도등록문화재의 수출 및 반출과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5장 예비문화재의 선정 및 관리

- 제44조(예비문화재의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 ·도등록문화재가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재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예비문화재는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다만,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선정된 예비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선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예비문화재의 선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선정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예비문화재의 관리) ① 예비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본 래 가치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비문화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예비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예비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이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단체를 예비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비문화 재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은 예비문화재의 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 문화재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6조(예비문화재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문화 재의 발굴과 보전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국민이 예비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예비문화재의 가치와 현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47조(예비문화재의 선정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예비문화재의 선정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
- 2. 예비문화재의 훼손 또는 멸실 등으로 보전가치가 사라진 경우
-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전 · 관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예비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이 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된경우 및 등록문화재로 등록 가능한 시점부터 등록 없이 10년이 지나면 그 선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제48조(예비문화재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예비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재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재가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관리단체의 선정·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9조(준용 규정) 예비문화재의 선정·선정취소의 고시·통지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는 "예비문화재"로 본다.

제 6 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

- 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보존)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 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목록 및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

- 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목록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목록 및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근현대문화유산의 목록 및 기록 작성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한다.
- 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주민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단체 및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4조(정보 교류 등의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 2.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 3.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자료교환 및 정보교류
 -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제7장 보칙

- 제5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행하는 명령·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이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 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의무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 제57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27조제1항(제11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재, 임시국가등록문화재 및 시·도등록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제11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 또는 경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 제58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등록문화재 또는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5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제18조제1항(제11조 및 제43조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제1항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제60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제5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권자의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 2. 제20조제1항제4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국가등록문화재, 임시국가등록문화재, 시·도등록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
 - 4.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
 - 5. 제29조제2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공개 제한을 위반하여 국가등록문화재를 공개한 자
-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제1항제6호(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7조제1항(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명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등록문화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재는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로 지정 된 자는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관리단체로 본다.

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문

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등록문화재"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를 "「문화재보호법」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재 등록 신청)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1.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 후 20년이 지난 경우
-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문화재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
- 3.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나 문화재청장이 요청한 경우
-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현대부동산유산인 등록문화재
-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4호의 근거 법률란 중"「문화재보호법」 제53조"를"「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한다.

법률 제17412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	이지구기드로드하게
	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시시시 중국군와세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 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 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